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81
----------	-----

제출연월일 : 2009. 11. 2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등).
- 나.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서식).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4호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51조제1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정보조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시 공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공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마을버스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공보”를 각각 “대전광역시공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의2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재정보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보조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	총사업비	원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 자본액			자기자본 부담액		
사업기간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자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재정보조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마을버스”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이하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b>&lt;삭제&gt;</b>  <b>&lt;삭제&gt;</b>
3. “한정면허”라 함은 시장이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4.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호나목의 ----- -----
4. “시내순환 관광버스”라 함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5. “시내버스”라 함은 마을버스·시내 순환관광버스가 아닌 <u>시행규칙 제6조 의2에 의한</u>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 버스를 말한다.	5.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보조 대상) (생략)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보조사업  2. ~ 3. (생략)	제3조(재정보조 대상) (현행과 같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1항 ----- ----- -----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조 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조 대상자가 보조를 받고 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보조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2. 보조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제4조(재정보조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재정보조의 방법 및 절차)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조를 결정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③ <u>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제5조(재정보조의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u> ----- ----- -----</p> <p>③ ----- <u>제2항에 따른-----</u> ----- -----</p>
<p>제6조(재정보조금의 차등보조) ① (생략)</p> <p>② <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u></p>	<p>제6조(재정보조금의 차등보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 따른-----</u> ----- -----</p>
<p>제10조(운행계통기준) ① <u>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운행노선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시 공보”라 한다)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 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선 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0조(운행계통기준) ① ----- ----- ----- ----- <u>대전광역시공보-----</u> -----</p> <p>② ----- <u>「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마을버스가-----</u>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송사업자의 등록 등) ①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시 공보</u>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u>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등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공고기간 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11조(운송사업자의 등록 등) ①----- ----- ----- <u>대전광역시공보-----</u> 1. ~ 4. (현행과 같음) ②<u>제1항에 따른 -----</u>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p>
<p>제1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u>제12조 규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시 공보</u>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제1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u>제12조에 따른 -----</u> ----- ----- <u>대전광역시공보-----</u> ----- ----- ----- ----- ----- 1. ~ 3. (현행과 같음)</p>
<p>제14조(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생략)</p> <p>②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및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u>제13조에 따라 -----</u>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③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한정면 허 신청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의2 규정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15조(노선운영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분담노선중 노 선의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노선에 대하여 매 1년마다 운송사업자를 변 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변경을 최장 6월 유예할 수 있다.</p>	<p>③-----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 -----</p> <p>제15조(노선운영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p>																																																																																																									
<p>[별지 서식]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보조 신청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0%;">신청인</td> <td>성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사업체명 (대표자 성명)</td> <td></td> <td>법인(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r> <tr> <td>주 소</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사업명칭</td> </tr> <tr> <td>면허종류</td> <td>면허일자</td> <td>면허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사업목적 및 내용</td> </tr> <tr> <td colspan="5">보조 받고자 하는 사유</td> </tr> <tr> <td>사 업 비</td> <td>총사업비</td> <td>원</td> <td>보조받고자 하는 금액</td> <td>원</td> </tr> <tr> <td>자 기 자본액</td> <td></td> <td></td> <td>자기자본 부 담 액</td> <td></td> </tr> <tr> <td>사업기간</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5">『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대전광역시장 귀하</td> </tr> <tr> <td colspan="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거래은행</td> <td>은행명</td> <td></td> <td>예금주</td> <td></td> <td>계좌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5" style="width: 10%;">첨부서류</td> <td colspan="6">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td> </tr> </table> </td> </tr> <tr> <td colspan="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구 비 서 류</td> <td colspan="3">신청인 제출서류</td> <td style="width: 10%;">담당 공무원 확인사항</td> </tr> <tr> <td>1. 사업계획서 1부</td> <td>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td> <td>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td> <td>1. 법인등기부등본 1부</td> </tr> </table> </td> </tr> <tr> <td colspan="5"> <small>*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재 정 보조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small> </td> </tr> </table>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보조 받고자 하는 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 기 자본액			자기자본 부 담 액		사업기간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거래은행</td> <td>은행명</td> <td></td> <td>예금주</td> <td></td> <td>계좌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5" style="width: 10%;">첨부서류</td> <td colspan="6">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td> </tr> </table>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구 비 서 류</td> <td colspan="3">신청인 제출서류</td> <td style="width: 10%;">담당 공무원 확인사항</td> </tr> <tr> <td>1. 사업계획서 1부</td> <td>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td> <td>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td> <td>1. 법인등기부등본 1부</td> </tr> </table>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small>*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재 정 보조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small>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보조 받고자 하는 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 기 자본액			자기자본 부 담 액																																																																																																							
사업기간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거래은행</td> <td>은행명</td> <td></td> <td>예금주</td> <td></td> <td>계좌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5" style="width: 10%;">첨부서류</td> <td colspan="6">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td> </tr> </table>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구 비 서 류</td> <td colspan="3">신청인 제출서류</td> <td style="width: 10%;">담당 공무원 확인사항</td> </tr> <tr> <td>1. 사업계획서 1부</td> <td>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td> <td>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td> <td>1. 법인등기부등본 1부</td> </tr> </table>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small>*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재 정 보조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small>																																																																																																									

# 관 련 법령(발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 4. 면허기간

#####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④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09년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 I. 심사 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9년 11월 3일
3. 상정일자 :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9. 12.17)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등).
- 나.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함 (안 별지 서식).

###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연정수)**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상위법과 타 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체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IV. 질의 ·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